

연금저축계좌 핵심(요약) 설명서

■ 주요 투자위험 요약

※ 상품의 주요 위험만을 표기한 것으로 전체 투자위험은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당사의 내부통제 절차를 거쳐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 설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상품 개요

상품명	연금저축 계좌				
상품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법에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 금융상품 ■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 상품이며 일시적인 자금运用到 적합하지 않습니다. 				
유사 금융상품과 구별되는 특징	구분	자산운용사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확정	종신,확정
	예금자보호법	해당사항없음	적용	적용	적용
투자위험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을 1등급(매우높은위험)부터 6등급(매우낮은위험)으로 총 6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금저축계좌 내 편입하시고자 하는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 및 고객님의 투자성향을 확인 하신 후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제 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저축은 일정 요건 충족 시 ① 납입기간에는 세액공제를, ② 연금수령 시에는 연금소득세 (5.5% ~ 3.3%, 지방소득세 포함)를 적용¹⁾ 받게 되어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수령이란, 다음의 연금수령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자금을 수령하는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금소득세 적용대상: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 및 연금저축의 운용 수익 • 세액 공제 : 연간 600만원 한도에서 연간 납입액의 13.2%¹⁾ 또는 16.5%²⁾ 까지(지방소득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 시 2)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수령 요건 (연금소득세 적용) 1) 가입 후 5년 경과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 2)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p style="text-align: center;">[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p>
중도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도해지 등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연금 외 수령")의 경우 기타 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과 부과¹⁾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5.5% ~ 3.3%)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소득세 적용 대상 : 세제혜택을 받은 납입금액 + 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해 적용
계좌 이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 계좌 간 상호 이체가 가능하며, 연금저축 이체 시에는 중도 인출로 보지 않아 세제 상 불이익이 없습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발생 가능한 불이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금저축계좌는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 귀속됩니다. 연금저축계좌는 계좌 내에서 펀드에 투자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금융투자상품 원금 일부 손실 또는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기 투자상품이며, 일시적인 자금 운용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중도 해지 등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자금수령("연금 외 수령")의 경우 기타소득세 (16.5% 지방세 포함)가 부과되므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5.5% ~ 3.3%)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고객의 주요 권리 및 민원처리,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청약철회권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모집기간이 있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청약이 철회된 경우 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합니다.
위법계약해지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한 위법 계약 해지 사유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를 위반한 경우) 있음을 고객이 서면 등으로 제시하는 경우, 해당 계약은 위약금 등 수수료 부과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과 최초 수수료를 납부한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년' 중 먼저 도달한 기간 내에 가능합니다.
자료열람요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열람요구권이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

	<p>는 권리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회사는 자료 열람을 요구 받은 날로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열람의 목적, 범위, 방법을 기재한 열람요구서를 작성하시어 지점 내방을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민원처리, 분쟁조정 절차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상품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민원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KCGI자산운용 고객센터(1588-5533), 및 홈페이지(www.kcgiam.com) 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5조제①항」에 따라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등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